

종신보험 보험료납입한도변경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종신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사망 보장과 사망 이외의 보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종신보험 보험료납입한도변경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계약과 관련해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기간 :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설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 매년 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주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일시납 계약의 일시납보험료 또는 월납 계약의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주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중에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다.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주계약에서 정한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라.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추가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주계약에서 정한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4조 (특약의 내용)

- ① 계약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료 납입한도'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주계약 약관에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정한 경우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다만, 주계약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를 기본보험료 총액의 300%로 정한 경우 300%로 합니다)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다음에 정한 한도로 합니다.
 - 월납
 - 월납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200\% \times$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 다만,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가 기본보험료 총액의 300%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납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300\% \times$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 $\times (1+10\% \times$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년수는 주계약을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고, 이후 연계약해당일 기준으로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일시납의 경우 10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③ 주계약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정한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

료의 납입한도는 다음에 정한 한도로 합니다.

- 월납

- 월납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100\% \times$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 $\times 10\% \times$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년수는 주계약을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고, 이후 연계약해당일 기준으로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일시납의 경우 10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④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합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 ⑥ 주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금리연동형보험'인 경우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제3관 기타사항 등

제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